

#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56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3월 3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536호)에 대해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(2023년 3월 3일)에서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조문의 해석상 모호함을 방지하고,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법적 용어로 정확하게 정비하며, 조문 간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에 포함된 조문과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한 바,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먹거리시민위원회 총 위원수에 부위원장 1명이 포함됨을 명시(안 제23조제1항).
- 안 제32조 제목에 사용된 용어를 법적 용어로 알맞게 정비(안 제32조).
- 안 제33조 본문의 제27조(기획조정위원회) 조문을 삭제 (안 제33조).

##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5명 이내(당연직 제외)”를 “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임명 또는 위촉하는”을 “위촉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2차례”를 “1차례”로 한다.

1. 먹거리 분야 전문가, 학계,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
2. 먹거리 분야 기관, 협의회,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
3. 그 밖에 먹거리 분야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24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시민건강국장”으로, “한다”를 “하고,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”으로, “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장이 직무를”을 “위원장 모두 직무를”로, “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위원장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25조를 삭제한다.

제2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“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”를 “연 1회 이상 개최하며”로,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시장”을 “위원장 2명 중 1명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같고,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”를 “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1. 먹거리정책분과위원회 :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, 먹거리 보장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사업개발, 먹거리 통계 등에 관한 자문
2. 먹거리건강분과위원회 : 건강한 식생활·영양 실천 교육·홍보 및 활성화, 식문화 실천 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항, 먹거리 정책 대 시민 홍보활동
3. 먹거리환경분과위원회 :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(생산, 가공, 유통, 소비, 폐기·자원화)실행을 위한 정책발굴 및 실천 방안 자문, 국내·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지원

제28조제3항 중 “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”를 “분과위원장”으로, “15명”을 “10명”으로, “호선하고,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”를 “호선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격월”을 “분기”로, “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를 “분과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32조의 제목 “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 해제·결격사유)”를 “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 해제·결격사유)”로 한다.

제33조 본문 중 “제26조, 제27조, 제28조”를 “제26조 및 제28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 (대 안)
<p>제2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<u>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5명 이내(당연직 제외)의 위원으로</u>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<u>임명 또는 위촉하는</u>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</u> : 행정1부시장, <u>여성가족정책실장, 복지정책실장, 평생교육국장, 시민건강국장</u></p> <p>2. <u>위촉위원</u>: <u>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</u>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3조(구성) ① ----- <u>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위촉하는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먹거리 분야 전문가, 학계,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</u></p> <p>2. <u>먹거리 분야 기관, 협의회,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</u></p> <p>3. <u>그 밖에 먹거리 분야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

현행	개정안(대안)
<p>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<u>2차례</u>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③ ----- -- <u>1차례</u>----- -- 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④·⑤ (생략)</p> <p>제24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<u>시장</u>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<u>한다</u>.</p>	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위원장 등) ① ----- <u>시민건강국장</u>----- ----- <u>하</u> <u>고,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</u></p>
<p>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<u>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</u>.</p>	<p>② ----- <u>위원장 및 부위원장</u>----- <u>한다</u>.</p>
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</u>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위원장 모두 직무를</u>----- <u>부위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⑤ <u>감사는 위원 중 호선하며,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</u></p>	<p>- .</p> <p>&lt;삭 제&gt;</p>

현행	개정안(대안)
<p><u>한다.</u></p> <p><u>제25조(고문)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<u>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</u></p> <p>1. <u>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</u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<u>제27조(기획조정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</u>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연</u> <u>1회 이상 개최하며</u> ----- -----<u>어느 하나에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위원장 2명 중 1명 이상</u>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
현행	개정안(대안)
<p><u>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, 지명된 기획조정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장 2명, 당연직 위원,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④ 기획조정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·조정</u></p> <p><u>2. 위원회의 예산·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</u></p> <p><u>3.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</u></p> <p><u>⑤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</p>	<p>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(대안)
<p>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·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<u>같고,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공공급식분과위원회</u> : <u>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,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, 영양개선, 공공급식의 건강먹거리 조달체계 확립</u></p> <p>2. <u>도시농업분과위원회</u> : <u>도시농업 활성화,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</u></p> <p>3. <u>식품안전분과위원회</u> : <u>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,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,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</u></p>	<p>----- ----- ----- --- <u>같다.</u></p> <p>1. <u>먹거리정책분과위원회</u> : <u>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, 먹거리 보장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사업개발, 먹거리 통계 등에 관한 자문</u></p> <p>2. <u>먹거리건강분과위원회</u> : <u>건강한 식생활·영양 실천 교육·홍보 및 활성화, 식문화 실천 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, 먹거리 정책 대시민 홍보활동</u></p> <p>3. <u>먹거리환경분과위원회</u> : <u>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(생산, 가공, 유통, 소비, 폐기·자원화) 실행을 위한 정책발굴 및 실천방안 자문, 국내·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지원</u></p>

현행	개정안(대안)
<p>4. <u>먹거리생태·상생분과위원회</u> : <u>먹거리 관련 도농상생 활성화,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회복력, 먹거리 자원순환(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화 등)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5. <u>먹거리건강·보장분과위원회</u> : <u>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(영양부족,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)을 위한 지침개발, 먹거리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, 재난 대비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6. <u>먹거리공동체분과위원회</u> : <u>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, 이해관계자(시-자치구-먹거리공동체 등)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, 먹거리공동체와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발굴 및 전략구축 등 지원활동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
현행	개정안(대안)
<p>7. <u>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</u>  <u>회</u> : <u>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</u>  <u>구현을 위한 먹거리시민 역량</u>  <u>강화 교육 및 홍보활동, 지속</u>  <u>가능한 먹거리문화 정착 및</u>  <u>행복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</u>  <u>위한 활동, 먹거리 전략 2030</u>  <u>성과확산을 위한 지원활동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</u>  <u>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</u>  <u>내로 구성하되, 분과위원장은 분</u>  <u>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</u>  <u>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</u>  <u>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</u></p> <p>④ <u>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</u>  <u>로 하되, 분과위원장은 필요하</u>  <u>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</u>  <u>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</u>  <u>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</u>  <u>수 있다.</u></p> <p>제32조(<u>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</u>  <u>· 위촉 해제·결격사유</u>) ① ~</p> <p>⑤ (생략)</p>	<p>&lt;삭제&gt;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분과위원장</u> --  -----<u>10명</u>-----  -----  ----- <u>호선한다.</u></p> <p>④ ----- <u>분기</u> -----  ----- <u>분과위원장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제32조(<u>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</u>  <u>· 위촉 해제·결격사유</u>) ① ~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

#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이념)**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민(이하 “시민“이라 한다)은 먹거리가 사회, 경제, 건강, 환경,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, 가공, 유통, 소비,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.

② 보건, 복지, 고용, 주택,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.

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.

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.

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12. 31.>

1. “먹거리”란 식품 및 농·수·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. 다만,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.
2. “먹거리기본권”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3. “먹거리보장”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, 사회적,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.
4. “도농상생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, 체험, 서비스 등의 교환,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.
5. “중소가족농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.
6. “먹거리체계”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, 가공, 유통, 접근, 소비, 조리,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·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.
7. “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”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.
8. “청소년수련시설”이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건강, 사회,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·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)**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.

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. <개정 2022. 12. 30.>

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·환경적·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. <개정 2020. 12. 31.>

**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

**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
2. 분야·단계별 핵심과제,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
3.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
4.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등 민·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**제8조(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)**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서울 먹거리헌장)**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민간전문가)**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0. 1. 9.]

### **제3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**

**제11조(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)** ① 시장은 시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.

1. 과일·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·취급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
2.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“청소년수련시설”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

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.

③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표시, 신청절차,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2조(기준설정 등)**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·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1.>

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지표설정 및 평가)**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시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.

**제14조(통계·정보)**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 및 건강, 영양 등 전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·조사표 문서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
③ 시장은 수집한 통계 및 정보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**제15조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, 식생활 행태, 영양상태 조사
  2.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
  3.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,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,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
 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
-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체계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6조(시민의 참여)** 시장은 먹거리정책 수립과 시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7조(먹거리 지원)** ① 먹거리 지원은 시민 또는 시민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8조(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)**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

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9조(먹거리 위기관리)**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,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**제20조(교육 및 홍보)**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대중매체,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## **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**

**제21조(위원회의 설치)**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·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22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·조정
2.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
3.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
4. 시민사회, 산업계, 학계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

협력

5.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
6.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
7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2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<개정 2020. 1. 9.>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9. 5. 16., 2022. 10. 17.>

1. 먹거리 분야 전문가, 학계,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
2. 먹거리 분야 기관, 협의회,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
3. 그 밖에 먹거리 분야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되고,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 <개정 2020. 12. 31.>

**제24조(위원장 등)** ①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

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하고,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

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<개정 2020. 1. 9.>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④ 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**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1. 9.>

1. 위원장 2명 중 1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

하지 아니하다.

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.

**제28조(분과위원회)**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·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0. 1. 9., 2022. 10. 17.>

1. 먹거리정책분과위원회 :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, 먹거리 보장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사업개발, 먹거리 통계 등에 관한 자문
2. 먹거리건강분과위원회 : 건강한 식생활·영양 실천 교육·홍보 및 활성화, 식문화 실천 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항, 먹거리 정책 대시민 홍보활동
3. 먹거리환경분과위원회 :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(생산,가공, 유통, 소비, 폐기·자원화)실행을 위한 정책발굴 및 실천 방안 자문, 국내·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지원

8. 삭제 <2020. 1. 9.>

9. 삭제 <2020. 1. 9.>

10. 삭제 <2020. 1. 9.>

②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로 하되,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. 9.>

**제29조(공청회 등 개최)**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,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·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**제30조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**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·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31조(활동지원)**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·연구 및 공청회·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3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 해제·결격사유)** ① 위원 중심의·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·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·자

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1.>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위원이 품위 손상, 장기 불참,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**제33조(수당)** 시장은 제26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

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34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35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**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22. 10. 17.>

[본조신설 2019. 9. 19.]

[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. 9. 19.]

**제3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제35조에서 이동 2019. 9. 19.]